[붙임 2]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인재 세부기준

(비수도권 지역인재)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(지방대학)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 (이전지역 인재)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(이하 "이전지역 학교" 라 함)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사람

※ 2개 이상 대학 졸업의 경우,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

□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

가.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○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, 본교가 서울 · 경기 ·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'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'

○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 · 경기 ·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
- 예시 : 고려대 세종캠퍼스, 동국대 경주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, 단국대 천안캠퍼스, 상명대 2캠퍼스(천안), 홍익대 세종캠퍼스,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등

※ 2022년도 대학알리미(www.academyinfo.go.kr) 공시 기준으로 분류

○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 · 경기 · 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
○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나.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

○ 본교가 서울 · 경기 · 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· 경기 · 인천 지역대학

○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
○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 상의 평생교육시설

○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□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○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
○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○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□ 이전지역 지역인재의 경우 광역 시 · 도를 기준으로 판단